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시행 2021.3.1] [경상국립대학교학교지침 제7호, 2021.2.26, 전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교무처(교무과) 055-772-0114

1. 목적

1. 목적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및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전임교원공개 채용지원자에 대한 심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3. 지원자의 자격

가. 학위: 전임교원 공개채용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자격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 교원 임용 규정」 제5조를 기본으로 하되,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실적:

1)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로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지원자의 경우 SCIE논문 게재실적이 200%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인 사람이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지원자의 경우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의 논문 게재실적이 200%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분야

나) 법과대학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분야

다) 산업체 경력 및 산학협력 등 특별한 실적이 필요한 분야

라) 학문의 특성상 3년 이상의 연구업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자격인정 논문발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야

마)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2) 자격인정논문 환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공동저자				주저자(제 1저자 및 교신저자)				
저자수	기본	AHCI, SCIE	JCR 상위 10% 이내 / SSCI	주저자수	기본	AHCI, SCIE	JCR 상위 10% 이내 / SSCI	논문 인용지수 (IF)200이상
1명(단독)	100%	130%	150%	1명	100%	130%	150%	200%
2명	50%	65%	75%	2명	80%	104%	120%	200%
3명	33%	43%	50%	3명	70%	91%	105%	160%
4명 이상	25%	33%	38%	4명이 상	60%	78%	90%	140%

※ 주저자 수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총수에 따라 인정하고 JCR상위 및 논문 인용지수(IF)는 채용 기준 최근 자료 적용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의하여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

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위 다항의 규정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누적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서(표11) 2부

나. 학위취득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문의 자격증(의전원),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서류 각 2부

다.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2부

라. 교육 및 연구계획서(A4용지 4장 이내) 2부

※ 강의담당 가능 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포함
(공개강의 및 전공문답 세미나에 활용함)

마. 삭제

바. 교육·연구·기타 경력목록(표13) 및 증명서 각 1부

사. 최종학위논문 2부

아.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목록(표12)과 연구실적물 각 2부

- 1) 실적물은 각 실적물의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원본의 목차, 저자, 게재지, 초록, 출판사, 발표일자 등)을 복사하여 별쇄본에 첨부하여 실적물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동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출판사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출력(칼라 프린트)하여 출력물 원본을 첨부하거나,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국·공립 도서관으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저서인 경우에는 원본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실적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실적물 중 주저자(공동 주저자 포함) 2편을 대표실적물로 정하여 연구실적 목록의 구분란에 대표실적물임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 3) 연구실적물은 응모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채용분야 결정

가. 전임교원 채용이 배정된 학부(과·전공·교실)에서는 교수채용분야요구서(표7)와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표8)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학부(과·전공·교실)의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는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5분의 4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신설학부(과·전공·교실)의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다.

라.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수 정원을 1회 배정한 것으로 산정한다.

6. 심사위원회 구성

가. 서류심사위원회: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 교무과장

나. 전공심사위원회

- 1) 전공심사위원회는 학내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세미나 심사를 위한 전공심사위원회는 학내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내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휴직자 제외)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의해 해당 학부(과·전공·교실)장(위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2명 또는 3명은 공개세미나 심사만을 담당하며,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퇴직 전 6개월 이내 이거나 지원자의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공동연구자는 학내심사위원에서 제외하되, 학부(과·전공·교실)장이 제외된 경우에는 학내심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 3) 해당 학부(학과·전공·교실)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학내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학부(학과·전공·교실)의 전임교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학부(학과·전공·교실)의 사정으로 학내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학내심사위원 구성 및 공채진행 여부는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4) 외부심사위원은 전공심사위원장이 해당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의해 총장에게 관련 전문가를 3배수로 추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은 추천된 관련전문가 중에서 2명 또는 3명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5) 학내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6) 신설학부(과·전공·교실)의 전공심사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관련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 3명(위원장 포함)으로 하는 학내심사위원과 외부 관련전문가 1명으로 하는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내심사위원 중 1명은 공개세미나 심사만 담당한다.
 - 7) 외부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지원자와 동일한 대학교(학사) 출신 교수
 - 나) 지원자의 출신대학교(학사)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 다) 지원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지도교수
 - 라) 지원자와 공동연구를 한 교수
 - 8) 지원자가 채용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공심사위원회(학내심사위원)에서 공채진행 여부를 결정하되, 공채진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 대학심사위원회 : 해당 대학(원)장(위원장), 해당 학과(전공·교실)장,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라.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 경상대학교대학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마. 면접심사위원회 : 총장, 교무처장, 관련 대학(원)장, 관련 전공심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7. 심사위원회 심사

가. 서류심사위원회

- 1)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자격 여부
- 2)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 3)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 4)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항목별로 심사하고 "가·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전공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 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논문, 저서 및 특허권) 등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나) 심사대상 학술지는 SCIE, A&HCI, SSCI, SCOPUS 등 국제규모학술지와 기타 국제규모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등 국제규모학술지와 기타 국제규모학술지로 한정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

- 가)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 일치 여부 : 적·부 판정(표1)
- 나)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 10점
- 다) 연구실적의 양적 평가 : 30점
- 라) 대표논문 2편의 질적 수준 : 30점
 - SCIE, A&HCI, SSCI 등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발표학술지의 Impact Factor나 인용지수 등을 질적수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 마) 교육, 연구 및 실무경력 : 5점
- 바)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 5점
- 사) 공개세미나 : 20점
- 아) 전시회 등의 업적과 법조실무 등에 관한 심사기준은 학부(과·전공·교실)가 따로 정한다.
- 자)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표8) 상의 구분 또는 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3) 심사방법

가)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 일치 여부에 대한 적·부 판정은 전공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그 외 항목의 평점은 최고치 및 최저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치로 하되, 최고치 또는 최저치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치 및 최저치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나)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다)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의 범위 내에서 학부(과·전공·교실)는 심사기준의 등급 및 평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심사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평점의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②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4)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는 학내심사위원들의 심사와 별도로 교무처장이 주관하고 그 결과를 전공심사위원장에게 이송한다.

5) 전공심사위원회는 전공 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만 점수를 산정하여 60점(만점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여 대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세미나를 실시한다.(전공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학과의 소수성별을 우선 선정한다.)

6) 학내심사위원으로 공개세미나를 실시하되, 학부(과·전공·교실)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7) 전공심사위원장은 전공심사위원들이 제출한 개인별 심사표(표2, 표3)를 종합하여 전공심사보고서(표4)를 작성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추천한다.

8) 전공심사위원장은 대학심사위원장으로부터 재심사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표10)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학심사위원회

1) 심사내용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공정성 및 재심사 필요성

2) 심사방법 및 절차

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전공심사결과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일 이내에 전공심사위원회에 재심사(표9)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대학심사위원장은 전공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전공심사보고서(표4), 대학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표5) 및 관련된 서류와 함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대학교본부심사위원장에게 추천하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 모두를 추천한다.

다) 대학심사위원장은 대학교 본부로부터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 재심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대학심사위원장은 대학심사위원회와 전공심사위원회 사이의 이견으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재심사 요구를 해당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총장에게 제출한다.

라.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1) 총장은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다.

가) 지원서

나) 학력, 경력, 성적증명서

다) 전공심사보고서

라) 대학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

2)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대학심사위원회 심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나) 대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필요성

다) 그 밖의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심사 결과의 재심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지원자가 5명 이상인 분야에서 전원이 전공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3일 이내에 대학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대학심사위원회의 재심결과 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또는 7. 다. 2) 가)의 경우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 5) 대학교본부심사위원장은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동점인 경우 공개세미나 점수가 높은 자)에 따라 채용인원과 같은 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6) 총장은 면접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전에 외국어구사능력검증을 실시하되, 학부(과·전공·교실)의 요구에 따라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교원채용 외국어구사능력 검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7) 면접심사 대상자가 결시 등의 사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심사결과 불합격되는 경우 및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공심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순위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면접심사위원회

- 1) 면접심사위원은 (표6)의 면접심사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교육자로서의 자질(가치관, 교육관, 품성 등)

나) 의사전달 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등)

다) 교원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 2) 면접심사대상자가 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면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3) 면접심사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바. 심사위원 교체

- 1) 신규채용 심사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내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8. 합격자 결정 및 직급 결정

가. 면접심사대상자 중 면접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장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합격자의 직급 결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급으로(경상국립대학교 기금교수 경력 포함)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사람. (사립대학의 경력은 교육부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한다.)
- 2)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8조(승진임용규정)[별표1] 기준의 3배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교육 및 연구경력이 12년(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17년) 이상. 다만, 특수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특별한 연구 및 산학협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17년 이상
 - 나)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교육 및 연구경력이 17년(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22년) 이상. 다만, 특수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특별한 연구

및 산학협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22년 이상

9.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

공개채용 심사과정에서 합산된 심사결과는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별 심사조서 및 심사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공심사위원장은 심사 전에 위원들로 하여금 서약서(표14)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제4조에 따라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과는 별도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